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제 안 설 명 서

2024. 12.

기후환경본부

□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

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

의안번호 제2260호,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 
충전료심의위원회 정비와

‘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’에서

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,

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충전 편의를 증대하고자 등,

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,

충전료심의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하여

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

이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삭제, 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 등을  
개정하였으며

□ 市 소유 충전시설을 계속 점거한 자에 대한

충전시설 점거사용료 부과를 위해

용어 정의 및 부과 근거 신설, 사용료 징수 업무의 위탁 근거 등의  
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충전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

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종료 후 빠른 출차 유도  
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이  
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